

제 1 조 [소송구조 대상자]

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2. 가정폭력피해여성
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4.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
 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 6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 7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 8. 개인회생 및 면책신청대상자
 9.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 10. 기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
- *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어도 구조타당성 및 각종 사정을 감안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.

제 2 조 [대상자 증빙서류]

소송구조 대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한다.

1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
2.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(주민센터)
3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4. 수급자증명서
5. 한부모증명서

제3조 [소송구조 제외 대상]

- ① 승소가액이 2억 원이 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 대상에서 배제한다.
- ② 본인 재산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 대상에서 배제한다.
- ③ 전 항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여성이나 양육비 등 특별한 목적을 둔 프로젝트 사업에 의해 지원기관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 [소송비용 상환]

- ①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「소송구조 약정금 처리지침」규정에 따라 의뢰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부분과 변호사보수비용을 산정하고 소송비용액(이하 “소송비용”)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. 이 경우, 의뢰자의 자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의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을 임의로 변제받지 못하는 등으로 소송비용을 상환할 수 없다면,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절차를 통하여 패소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.

* 별표 1. 소송구조 신청서류

별표 1.

소송구조 신청서류

1. 소송구조 신청서(상당소 비치)
2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(주민센터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증명서 중 택 1
3. 본인 진술서
 - 가.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
 - 나. A4 용지로 3매 이상
4. 혼인관계증명서(본인, 상대방)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, 상대방), 기본증명서(본인, 상대방),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자녀) 및 기본증명서(자녀)
5. 주민등록등본
 - 가. 상대방과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 및 상대방 각1부
 - 나.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말소자 등본 1부
6. 주민등록초본
 - 가. 주소변동내역포함
 - 나. 본인 및 상대방 각1부
7. 입증방법
 - 가. 증인진술서: 공증 또는 진술서에 증인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
 - 나. 녹취록: 속기사사무소에 의뢰
 - 다. 그밖에 가능한 입증 방법 등
예시(가정폭력의 경우): 진단서, 가정폭력사실확인서, 지구대신고사실증명서, 사진(종이에 붙이고 날짜 및 설명 쓸 것)
8. 본인막도장
9. 가압류 사건진행시 각종 등록부,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2부씩 필요
 - 가. 부동산 가압류시 부동산등기부등본
 - 나. 전세보증금 가압류시 전세계약서

* 본인진술서 작성 요령(이혼 소송의 경우)

1. 기초사실: 의뢰자와 상대방의 성명, 직업, 현 거주지, 재산 등 사실대로 명시할 것
2. 결혼 후 현재까지의 상황: 혼인생활의 발생 순서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일자, 장소, 방법, 이유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
3. 혼인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재산형성 과정: 부동산, 예금, 채무 등 세분화하여 기재할 것
4. 요구사항: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
예시: 이혼 / 위자료 금10,000,000원 / 재산분할 금30,000,000원
친권 및 양육자 지정 / 양육비 매월 금200,000원
면접교섭권 등